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2명(6급 2명)을 감원하는 대신 서면질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조세박물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등의 회계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6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4명(6급 17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세원정보과의 업무분장을 업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9급 1명)을 상호 재배정하고, 지방세무

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9급 7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소송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한도를 53명에서 54명으로 1명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9. ~ 6.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3.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제31조제1항 단서 중 “26명(행정사무관 4명, 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8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을 “28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10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9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을 “4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5명(5급 1명, 6급 46명, 7급 1명, 8급 57명)”을 “121명(5급 1명, 6급 62명, 7급 1명, 8급 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53명(5급 9명, 6급 43명, 7급 1명)”을 “54명(5급 9명, 6급 44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동탄6동”을 “동탄6동·동탄7동·동탄8동”으로 하고, 같은 표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화성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동탄6동”을 “동탄6동·동탄7동·동탄8동”으로 한다.

별표 6 중 운전주사보 “3”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12”를 “914”로 하고, 일반직 계 “908”을 “9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4”를 “113”으로 하고, 세무주사 “242”를 “244”로 하며, 세무주사보 “164”를 “165”로 하고, 운전주사보 “3”을 “2”로 하며, 운전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을 각각 “74”로 하고, 행정사무관 “15”를 “1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3”을 “24”로 하고,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4”를 “13”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17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고, 세무서기보 “3,472”를 “3,479”로 하며, 운전서기보 “158”을 “15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91”을 “484”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9,901”을 “19,91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851”을 “19,867”로 하며, 일반직 계 “19,851”을 “19,867”로 하고, 세무주사 “4,232”을 “4,248”로 하며,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3”을 “24”로 하고,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4”를 “13”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17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고, 세무서기보 “3,472”를 “3,479”로 하며, 운전서기보 “158”을 “15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91”을 “484”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2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
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3명 및 세무주사보 1명, 별표 7의2의 행정
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6명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사국) ① ~ ⑥ (생략)	제9조(조사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u>
<신설>	3. <u>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u>26명</u> (행정사무관 4명, 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28명</u> (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10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8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세무주사보 9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4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1명)-----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
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5
명(5급 1명, 6급 46명, 7급 1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한다.

⑤ ~ ⑦ (생략)

⑧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
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53명(5급 9명, 6급
4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
주사 1명, 별표 7의2의 세무주
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
사 1명은 각각 2020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 121
명(5급 1명, 6급 62명, 7급 1명,
8급 57명)-----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54명(5급 9명, 6급
44명, 7급 1명)-----
-----.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별표 7의2의 세무
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
주사 1명은 각각 2022년 12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
재정부령 제64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에
로서 별표6의2의 개정규정에 따
라 감원된 정원 5명(전산사무관
5명)을 제외한 정원 3명(세무주
사 3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
1명(세무주사 14명, 세무서기 5
7명)은 각각 2020년 12월 15일
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③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으로 본다.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 2022년-----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운전주사보			<u>3</u>		<u>2</u>	-1	
		•		•	•		
		•		•	•		
운전서기보			<u>3</u>		<u>4</u>	+1	
		•		•	•		
		•		•	•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12</u>	<u>914</u>	+2
•	•	•	
•	•	•	
일반직계	<u>908</u>	<u>910</u>	+2
•	•	•	
•	•	•	
행정사무관	<u>114</u>	<u>113</u>	-1
•	•	•	
•	•	•	
세무주사	<u>242</u>	<u>244</u>	+2
•	•	•	
•	•	•	
세무주사보	<u>164</u>	<u>165</u>	+1
•	•	•	
•	•	•	
운전주사보	<u>3</u>	<u>2</u>	-1
•	•	•	
•	•	•	
운전서기보	<u>2</u>	<u>3</u>	+1

	.	.	.	
	.	.	.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3</u>	<u>74</u>	+1
일반직 계	<u>73</u>	<u>74</u>	+1
·	·	·	
·	·	·	
행정사무관	<u>15</u>	<u>16</u>	+1
·	·	·	
·	·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3</u>	<u>24</u>	+1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14</u>	<u>13</u>	-1
•	•	•	
•	•	•	
전산주사보	17		
<u>운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세무서기보	<u>3,472</u>	<u>3,479</u>	+7
•	•	•	
•	•	•	
운전서기보	<u>158</u>	<u>157</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91</u>	<u>484</u>	-7
•	•	•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901</u>	<u>19,917</u>	+1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9,851</u>	<u>19,867</u>	+16
일반직 계	<u>19,851</u>	<u>19,867</u>	+16
·	·	·	
·	·	·	
세무주사	<u>4,232</u>	<u>4,248</u>	+16
·	·	·	
·	·	·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3</u>	<u>24</u>	+1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14</u>	<u>13</u>	-1
·	·	·	
·	·	·	
전산주사보	17		
<u>운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세무서기보	<u>3,472</u>	<u>3,479</u>	+7
·	·	·	

•	•	•	
운전서기보	<u>158</u>	<u>157</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91</u>	<u>484</u>	-7
•	•	•	
•	•	•	